

의안번호 제140호

#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	
제출연월일	2020. 10. 13.	

##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40호

제출연월일: 2020. 10. 13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#### 1. 개정이유(배경・필요성)

- O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- 상환금 체납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 규정(안 제10조제2항)

#### 2. 주요내용

○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단서조항을 삭제함.(안 제10조제2항 삭제)

#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참고1 참조
- O 기타사항
  - 가.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 - 나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 - 다. 규제 심사 : 규제 심사 대상 아님
  - 라.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   - 1) 예고기간 : 2020. 9. 3. ~ 2020. 9. 23. (20일 이상)
    - 2) 예고결과 : 참고3 참조
  - 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 - 바. 충청남도 소관 실과 : 건축도시과

□ 개정조례안논산시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	도시정책과장	이 남 해
안	공동주택팀장	김 준 호 (746-6231)
자	담 당 자	이 소 연 (746-6234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준용규정) ① 이 조례에 규	제10조(준용규정) ①
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	
회계의 예에 준한다.	·
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	<u>&lt;</u> 삭 제>
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	
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	
<u>할 수 있다.</u>	

# 붙임

# 비용추계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O 해당 없음
- 2. 비용추계결과
  - O 해당 없음
- 3. 작성자

도시정책과장 이 남 해

### 참고1

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- □「지방자치법」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<u>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</u>

## 참고2

## 관련 공문

□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-7307(2020. 5. 25.)호 관련, 2021(20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(필수조례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)

### 참고3

# 입법예고시 의견제출

가. 관계부서 협의 : 제출된 의견없음

나. 전자공청회 : 찬성1, 반대1

#### 안내문정보

_ "	
안내문 내용	논산시 입법예고 제2020-1419호 「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09월 02일
신청정보	논산시장
토론기간	2020-09-02 ~ 2020-09-22

토론기간	2020-09-02 ~ 2020-09-22
제목	「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발제요약	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-상환금 체납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 규정(제10조제2항)
	유자르 바의 사라이 사하그의 체나하여의 때에는 지바세 지수이 셈에 따라 체나하도로 하 규저의 버려이 일이 어이 제사권의 제

한하는 규정으로서 해당조항을 삭제

충청남도

#### 발제내용

이게비수	FZJH	TII O	사비 🏝 고고기가	의견수	=	조계기계 중심스	EROI (A)	공청회
의제번호	토론구분	제목	상태 💲 공고기간 찬성	반대	기타	구판기판 소외구	등속된 🕝	결과반영

2020-09-02 1AE-2009-0000281 입법예고 「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... 토론종료 21일 1 1 0 X 논산시 전체 2건 10개씩 정렬 ▼

#### 의견수2건 답글 0건 관심의견 0건 참조의견 0건 참여자2명

번호		내용	좋아요	싫어요
1	반대합니다. 이기범 2020-09-03 00:43 [답글(0)] 좋아요	실어요   신고   관심지정	0	0
2	yyb 이건범 2020-09-02 13:19 답글(0) [좋아요	[싫어요] [신고] [관심지정]	0	0

### 다. 자치법규정보시스템: 제출된 의견없음

자치법규정보시스템

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최근제개정자치법규





#### 입법예고

공고(공포)명	「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입법예고				
자치단체	충남	충남 부서			
공고(공포)번호	논산시 공고 제2020-1419호	공고(공포)일자	2020년09월02일		
	법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다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리		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논산 구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		
첨부파일	철부파일 급기 「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입법예고.hwp				

목록

#### 국민의 의견 전체의견(0), 찬성(0), 반대(0), 기타(0) 작성자 찬성반대 작성시간 등록 된 의견이 없습니다. 이름 비밀번호 ○찬성 ○반대 ○기타 의건등록 0/800 byte